

의안번호	2217057
의 퇴 인	김병주의원
회 답 일	2026.10.16.
추 계 번호	26D1025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거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군유�휴지등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 (군유�휴지의 처분 등)	국방부장관은 군유큐지에 대해 징발 해제, 양여, 매각, 사용허가, 대부 등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이 경우 활용하고자 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제외한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함), 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5항) 국가가 군유큐지를 매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제9항) 제9항에 따라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의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함(제10항)	의무규정
3	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군유큐지 활용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군유큐지 안의 국유지가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주차장·교량, 공원·녹지, 수도·공동구(共同溝), 공공청사·문화시설, 교육시설·종합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흥지 안의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토지 대금을 5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하도록 매각하거나, 5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대부할 수 있음(제2항)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게 대부하는 군유흥지 안의 국유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제6항)	
4	안 제17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군유흥지등의 주민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사업,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사업,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우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8조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군유흥지등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비에 해당하는 비용 전액을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흥지등에 회사를 설립하는 자, 군유흥지등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 인·허가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사용료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제3항)	
7	안 제27조 (고용안정사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8	안 제28조 (사회기반시설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휴지등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유휴지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29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30조 (교육·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유휴지등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라 군유휴지등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군유휴지등의 밖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으로 인·허가등을 할 수 있음(제2항)	
11	안 제31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유휴지등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군유휴지의처분등)	
3	안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군유휴지 활용 지원)	
4	안 제17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5	안 제18조(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	
6	안 제19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7	안 제27조(고용안정사업 등)	
8	안 제28조(사회기반시설 지원)	
9	안 제29조(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10	안 제30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11	안 제31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2. 상세 사유

□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정안은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군유휴지등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군유휴지의 규모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각 지자체별로 연구용역 추진

- 여부 및 금액, 시기나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광역지자체별 군유휴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군유휴지 규모가 큰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1억 5,400만원,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에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음

[표 1] 군유휴지 현황

(2026. 2.27. 기준 / 단위: 필지, 만㎡)

지역구분	현황		지역구분	현황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서울특별시	56	21.9	충청북도	103	55.9
부산광역시	2	0.7	충청남도	113	13.1
대구광역시	13	2.6	전라남도	50	30.8
인천광역시	63	5.9	경상북도	71	42.4
광주광역시	5	0.6	경상남도	35	8.1
대전광역시	23	3.2	강원특별자치도	562	176.5
울산광역시	6	0.3	전북특별자치도	27	5.3
세종특별자치시	12	0.6	제주특별자치도	3	1.3
경기도	1,372	418	계	2,516	787.2

자료: 국방부

□ 군 유휴지의 처분 및 활용지원 등(안 제14조 및 안 제16조)¹⁾

- 안 제14조에 따라 군유휴지의 징발 해제, 양여, 매각, 사용허가, 대부 등을 하기 전에 지상물이나 오염토양 정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안 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방공기업인 경우, 토지대금을 장기분할상환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하는 군유휴지 안의 국유지의 연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재정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군유휴지의 징발 해제, 양여, 매각, 사용허가, 대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고 정화 대상 토지의 오염도, 정화방법, 국유지 연간사용료와 감면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현 시점에서 재정수입 감소 또는 추가재정소요

1) 제정안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매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줄 경우, 국가의 매각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매각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추가재정소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사업비 지원과 조성(안 제17조)

- 안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군유휴지등 주민의 취업 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사업, 군유휴지등의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정비사업,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사업,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우선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각 지자체의 종합계획과 그에 따른 총사업비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일반산업단지 조성보조금 지원의 특례(안 제18조)

- 안 제18조에 따라 군유휴지등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전액을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법은 30만㎡ 이상 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비용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100%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도·폐수시설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70%, 수도권은 50%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2] 산업단지 인프라 지원 현황

구분(관련법령)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첨산단
지 원 중	■ 진입도로(국토부) (산업법 제29조) (운영지침 제15조)	- 국비 100% 지원(접경지역 제외 한 수도권은 제외)	- 30만㎡이상 산단 국비 100% 지원(접경지역 제외한 수도권 은 제외)	
	■ 용수시설(환경부, 지자체) (산업법 제29조)	- 국비 100% 지원(환경부(출연금) 30%, 수공 70%, 접경지역 제외 한 수도권은 제외)	- 30만㎡이상 산단 지자체 100% 지원(접경지역 제외한 수도권은 제외)	
	■ 하·폐수시설(환경부) (산업법 제28조)	-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접경지역 70%, 접경지역 제외 수도권 50% 국비 지원 * (근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 전기시설(한국전력) (산업법 제29조 등 (기업활동특별법 제24조)	- 산단 안 전력시설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도로까지 한국전력 설치 * 다만, 산업단지 내 지중화 사업은 원인자(사업시행자) 50% 부담		
미 지 원 중	■ 산단 내 간선도로, 공원·녹지 시설, 지식산업센터 용지매입비 (산업법 제28조)			
	■ 공동구 건설비 (산업법 제29조)			

자료: 국토교통부

- 다만, 군유휴지에서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하수도·폐수시설 건설 계획이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지원 중인 진입도로 사업의 평균 총사업비는 1곳당 300억원임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안 제19조)²⁾

- 안 제19조제2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등 부담금 등에 대해 관계법률의 기존 감면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신규 감면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재정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안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음

2) 안 제19조제1항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는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058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059호)에서 연계법안이 의결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미첨부사유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 부과될 부담금의 규모 및 감면비율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고용안정사업 등(안 제27조)

- 안 제27조에 따라 군부대 이전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제정안에 따라 고용안정사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군부대 이전 등으로 고용안정사업의 확대 정도에 대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참고로, 고용안정사업 예산은 2026년 기준 2조 416억원임

[표 3] 고용안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25년(결산)	2026년(계획)
합계	20,206	20,416
고용유지지원금	717	702
고용창출장려금	204	21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0	3
고용안정장려금	3,813	4,394
직장어린이집지원	1,078	1,039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631	536
고용서비스모니터링	41	81
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392	395
지역고용촉진지원금	22	6
청년내일채움공제	37	8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2,918	2,497
내일배움카드	5,435	5,090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1,292	1,922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2,755	2,680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	616	598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	245	251

자료: 고용노동부

□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

- 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 유흥지 등에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라 군유휴지 등에 건설해야 할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이 증가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군유휴지 등에 건설할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종류나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의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